

# 공 고

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12 - 59 호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
2012. 02. 22.

## 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별첨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시점 - 정자동 45-34번지, 종점 - 정자동 45-34번지
3. 도로길이 : 73.5 m
4. 도 로 폭 : 4.0 m
5. 도로면적 : 293.0 m<sup>2</sup>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5-34번지상의 건축허가(신축)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8. 편입토지

(단위 : m<sup>2</sup>)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 고
정자동	45-34	대	293.0	293.0	-	수원시	
합 계			293.0	293.0		수원시	

### 9. 기타사항

위 도로의 면적, 길이, 폭은 개략치 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(031-228-5457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 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·성명	시설9급 이선영	전화 번호	228-5457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### 위치도 및 현황도



위치도

축척 1 / 2,000



현황도(지적도 첨부)

축척 1 / 600